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10월 13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

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수시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